

2024년도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 참여 모집공고

1. 지원 목적

-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국내 물류운송 부문 및 물류시설(센터) 등에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적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여

2. 신청 기간

- 2024년 2월 28일(수) ~ 2024년 4월 1일(월), 33일간

3. 용어 정의

가. 물류기업: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업, 물류시설운영업, 물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(법인)로서, 1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연간 물동량이 5 TOE 이상인 기업을 말함

나. 화주기업: 화물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화물의 소유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업에서 수송방법을 결정하는 자(법인)를 말함

다. 개인운송사업자: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운송사업자를 말함

4. 보조사업 내용

가. 정부지정핵심사업

-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의 '무시동 히터', '무시동 에어컨' 장착비용 중 일부(30~50%)를 국고 보조

나. 녹색물류공모사업(자유 공모)

1) 민간공모사업

-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또는 물류시설(센터)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인 다양한 장비 및 기기에 대해 평가·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

※ 공동수송·배송과 친환경·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,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, 장비, 차량개조 등

< 그간, 민간공모사업으로 지원한 '장비' 및 '기기' >

- 에어스포일러, CNG엔진 교체, 물류센터 조명(LED) 교체
- 택배집배송 전동차 교체, 유닛쿨러 헨모터 교체, 공기저항 저감장치 장착
- 전자식 펜클러치, 트레일러 2단 리프트, 개량 트레일러
- 차량용 이동식 냉장칸막이,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(PCM)
- 발전제어장치, 스마트클러치, 경량 트레일러, 무시동 전기냉동기
- 택배차 하이브리드 개조, 친환경엔진오일, 친환경포장재, 친환경물류용기
- 배출가스 저감장치(전자식 매연 저감장치) 등

2) 효과검증사업

- 제조기업이 개발한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전 또는 물류기업, 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주는 사업

※ 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하되, 임차료·장착비 등 차량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

< 그간 효과검증 시험 ‘장비’ 및 ‘기기’ >

- 냉각팬용 전자식 클러치, 야드트랙터 천연가스엔진 교체, 무시동 히터
- 타이어공기압 감지시스템, 지능형 발전제어장치, 차량용 이동식 냉장칸막이
- 무시동 에어컨, 9단오토미션, 전기식 냉동시스템, DC전기 냉동기
- 경량화휠 및 저저항타이어, 스마트자동화클러치, 전기 구동식 냉동기
- 무시동 전기히터

5. 신청 자격

가. 정부지정핵심사업

-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를 등록·운영하는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중 “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”에 참여하는 기업(개인)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

나. 녹색물류공모사업

1) 민간공모사업

-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화물운송사업자 및 물류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음.
- 단,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‘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’ 참여한 기업(개인)만 신청 가능

2) 효과검증사업

-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·보유한 제조기업(개인)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‘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’ 참여기업(개인)이 신청할 수 있음

6. 지원 규모(909백만원)

사업명	예산 (백만원)	지원규모 및 상한액
① 정부지정핵심사업	759	
▪ 무시동 히터 장착 지원	366	▪ (지원규모) 사업비의 50%이내 ▪ (상한액) 대당 최대 40만원 ※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% 이내
▪ 무시동 에어컨 장착 지원	393	▪ (지원규모) 사업비의 50%이내 ▪ (상한액) 대당 최대 80만원 ※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% 이내
② 녹색물류공모사업	150	
▪ 민간공모사업	120	▪ (지원, 상한액규모) 중소·중견기업은 50%,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30% 이내
▪ 효과검증사업	30	▪ (지원규모) 시험비 전액지원(단, 임차료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) ▪ (상한액) 건당 30백만원 이내

*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신청이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

**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내 차량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, 별도 지정 연식은 '녹색물류협의기구' 결정에 의해 변경 가능

***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·운영을 통해 사업포기·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

**** 기업상한액은 중소·중견기업은 최대 50%·150백만원이내,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%·100백만원 이내 지원,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

***** 전년도 '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'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(S 100%, A 80%, B 60% 지원, 단,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)

7.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

- 무시동 히터 및 무시동 에어컨은 「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」(이하 “지침”)[별첨1]의 성능기준[별첨2]을 충족하는 제품을 장착하여야 함

8. 신청 방법

-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 또는 화물복지재단(www.fordrivers.or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
- 신청서 제출방법 : 직접, 우편, e-mail 제출
 - ※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직접, 우편, e-mail 도착분만 인정
- 온·오프라인 접수처 : 화물복지재단 사업과
 - 주소 : (우 06144)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(역삼동),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
 - 온라인(e-mail) 주소 : gl@fordrivers.or.kr
 - 전화 : 070-4881-7606

9. 제출 서류

-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, 제출시기, 종류,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[별첨3]과 같음

구분	공통 제출	추가 제출
개인운송사업자	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등록원부(갑기준)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	-
법인사업자	※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⑤ 개인정보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⑥ 기타 세부 심사·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	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사업계획서요약서

※ e-mail 제출 시 상기 서류의 스캔본 첨부

10.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

-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·평가기준 [별첨4]에 따름
- 선정결과 발표(예정) : 2024년 5월 중
※ 선정결과 발표 시 개별 문자 안내

11.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

-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음
- 사업을 착수한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운송사업자는 장비·기기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
 -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구 분	당해 사업연도 장착 인정기간		재배정 인정기간
	장착 인정기간	조기장착 인정기간	
무시동 히터	착수일로부터 9월 말까지	착수일로부터 6월 말까지	재배정일로부터 10월 말까지
무시동 에어컨	착수일로부터 8월 말까지		재배정일로부터 9월 말까지
그 외 공모사업	착수일로부터 9월 말까지		재배정일로부터 10월 말까지

12. 조기장착 인센티브 및 단순 포기자 패널티

- 상기 조기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한 보조사업자(물류기업 · 화주기업 · 개인운송사업자) 및 녹색물류 공모사업(효과검증 제외)은 지침 제17조에 의거 차년도 기업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

< 조기장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(안) >

기업등급종합평가 = 이행계획평가 + 제도참여가산점

* 제도참여율 : 착수일로부터 6월 말까지 장착률 100% 달성 시 10점 부여

-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,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16조에 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단, 지침 제16조제3항에 의거 천재지변,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

< 페널티 적용기준(안) >

구 분	장비 장착률	페널티 부과 내용	비 고
당초 수량	50% 미만	2년간 지원 제외	
	50% 이상 ~ 80% 미만	1년간 지원 제외	
재배정 수량	100% 미만	1년간 지원 제외	
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배정 중 1대를 포기할 경우 2년 제한 대상임

13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을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수령을 진행(www.gosims.go.kr)함.
-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 히터, 무시동 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음
-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행위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

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
- 기 지원받은 차량(차대번호 기준)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입증(사진 등)하여야 하며,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
-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, 중복지급,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, 개인사업자의 책임임
- 위험물질(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의2)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(사진 등)하여야 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물복지재단 사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T. 070-4881-7606)

2024. 2. 28.
국토교통부장관